

2014년 국가직 7급 형사정책 A 책형

해설 : 임현
케이지패스원 법원검찰교정팀 교수
에듀에프엠 교정학, 형사정책 교수

문 1. 형사정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정책은 초기에는 형사입법정책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일반대책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 ②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은 범죄와 범죄자, 사회적 일탈행위 및 이에 대한 통제방법을 연구하는 경험과학 또는 규범학이 아닌 사실학의 총체를 말한다.
- ③ 형사정책학은 법학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주변 학문영역의 성과를 기초로 하나, 단순한 종합과학이 아니라 범죄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목표로 하는 독립과학이다.
- ④ 형사정책학은 기존 형벌체계가 과연 범죄대책으로서 유효한가에 대한 검증을 함으로써 형법규정의 개정방향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성을 가진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이란 범죄자 또는 범죄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 등의 형사제재를 통하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형사정책학은 경험과학이나 사실학에 머물지 않고 규범학적 측면도 포함된다.

문 2.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서 제시한 개인의 적응방식 중 다음의 사례에서 찾을 수 없는 유형은?

- 비록 자신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자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 횡령 등을 행하는 자
- 사업이 수차례 실패로 끝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랑생활을 하는 자
- 환경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댐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자

- ① 혁신형 (innovation) ② 회피형 (retreatism)
- ③ 의례형 (ritualism) ④ 반역형 (rebellion)

☞ 정답 : ③

☞ 해설 : ③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은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화된 수단이 제한되었을 때 개인의 적응방식에 따라 비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머튼은 개인의 적응방식으로 동조형(confirmity), 혁신형(개혁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회

피형(도피형)(retreatism), 반역형(혁명형)(rebellion)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의례형은 문화적 목표가 없고 제도화된 수단은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성공의 목표는 외면하고 제도적 수단에 충실한 순종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자로서, 무사안일한 생활을 하는 관료나 중하층 봉급생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비록 자신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어진 조건 내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자 → 주어진 조건 하에서 성공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자이므로, 성공목표와 제도적 수단이 일치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동조형에 해당한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기, 횡령 등을 행하는 자 → 제도화된 수단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범죄를 행하는 자이므로, 성공목표를 위한 제도화된 수단이 결여된 자로서 재산범죄를 많이 일으키고 범죄학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혁신형(개혁형)에 해당한다.

○ 사업이 수차례 실패로 끝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부랑생활을 하는 자 → 수차례의 실패로 목표를 상실하고 제도화된 수단도 결여된 자로서, 자포자기의 생활을 하는 자이므로 회피형(도피형)에 해당한다.

○ 환경보호를 이유로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댐건설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자 → 공동체 사회의 목표인 공공기관의 활동을 거부하고,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활동이 외부로 표출되기를 바라며 시위를 하는 자이므로,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자로서, 반역형(혁명형)에 해당한다.

문 3.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과거에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주위로부터 칭찬, 인정, 더 나은 대우를 받는 등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 ② 타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에 따르면 학습의 방향은 대개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 ③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접촉유형의 차이가 아니라 학습과정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 ④ 글레이저(Glaser)에 따르면 범죄를 학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하는지 또는 자기의 행동을 평가하는 준거집단의 성격이 어떠한지 보다는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는 차별적 강화이론에서 범죄행위의 결과로 보상을 얻게 되고 처벌이 회피되면 그 행위는 강화되며, 반대로 보상이 상실되고 처벌이 강화되면 그 행위는 약화된다고 보았다. 즉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의 칭찬 또는 주위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등의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② 타르드(Tarde)의 모방의 법칙에 따르면 학습의 방향은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을 모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하류계층이 상류계층을 모방하는 형태가 일반

적이다.

③ 서덜랜드(Sutherland)는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사회조직은 범죄집단·중립집단·준법집단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질적 이익과 이질적 목표를 가진 잡다한 조직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어느 집단과 친밀감을 가지고 차별적 접촉을 갖느냐에 따라 특정집단의 행동양식을 배우고 익혀나간다고 보았다. 즉 범죄자는 타인과의 접촉과정에서 범죄행위를 배우게 된다고 보았으며, 최우선적인 접촉대상은 부모, 가족, 친구 등이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된다.

④ 서덜랜드(Sutherland)가 직접적인 대면접촉에 의한 학습을 주장한데 비하여, 글레이저(Glaser)는 대중매체로부터 보고 듣던 사람과의 동일화를 통해서 또는 범죄반대세력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즉 글레이저는 범죄적 행동양식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TV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자신의 이상형을 일치시키는 관념적 동일화를 거쳐 범죄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문 4.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복지법 상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③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④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 ①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문 5. 기소유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초범자와 같이 개선의 여지가 큰 범죄자를 모두 기소하여 전과자를 양산시키고, 무의미한 공소제기와 무용한 재판 등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 ㄴ. 소년법 상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를 받게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ㄷ. 공소권행사에 있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공소권행사에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 ㄹ. 피의자에게 전과의 낙인 없이 기소 전 단계에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ㄹ

☞ 정답 : ③

☞ 해설 :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ㄴ. 소년법 제49조의3 제1호

ㄹ.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유예제도는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계적인 공소권행사의 문제점을 없애고 피의자에 대한 적정한 형사사법권의 행사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판 및 형집행 절차 이전에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므로, 법원 및 교정기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ㄱ. 기소유예제도는 검사의 재량에 의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문과 같은 문제점은 있을 수 없다. 지문의 내용은 기소법정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이다.

ㄷ. 기소유예제도가 공평하게 운영되지 않고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공소권행사에 있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공소권행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등의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문 6. 벌금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② 벌금은 상속이 되지 않으나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벌금의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다.
④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봉사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낸 것으로 본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형사소송법 제478조

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형법 제69조 제2항).

③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 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분할납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제1항 :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 ④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는 대상자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6조).

문 7. 사회해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별적으로 누가 거주하든지 관계없이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 간에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ㄴ. 쇼우(Shaw)와 맥케이(Mckay)는 도심과 인접하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뀐 이른바 전이지역(transitional zone)의 범죄발생률이 지속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다.

ㄷ. 버식(Bursik)과 웹(Webb)은 지역사회가 주민들에게 공통된 가치체계를 실현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사회해체라고 정의하고, 그 원인을 주민의 비이동성과 동질성으로 보았다.

ㄹ. 버식(Bursik)과 웹(Webb)은 사회해체지역에서는 공식적인 행동지배규범(movement-governing rules)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비공식적 감시와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가 커진다고 주장하였다.

ㅁ. 사회해체지역에서는 전통적인 사회통제기관들이 규제력을 상실하면서 반가치를 옹호하는 하위문화가 형성되나, 주민이동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문화는 계승되지 않고 점차 줄어들면서 범죄율이 낮아진다고 본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 정답 : ④

☞ 해설 : ④ 옳지 않은 것은 ㄷ, ㄹ, ㅁ이다.

ㄷ. 버식(Bursik)과 웹(Webb)은 지역사회해체의 원인을 이질성 및 이질성으로 보았다. 즉 지역주민의 이동이 많고 주민의 이질성이 많은 지역은 그 지역사회가 주민들에게 공통된 가치체계를 실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회통제능력이 결여된 사회해체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ㄹ. 버식(Bursik)과 웹(Webb)은 사회해체지역에서는 공식적인 행동지배규범이 있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며, 또한 비공식적 감시나 지역주민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도 약화된다고 보았다.

ㅁ. 사회해체론은 특정지역에 누가 거주하느냐와 상관없이 그 지역의 특성과 범죄발생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므로, 사회해체지역에서 형성된 하위문화로 인하여 구성원의 잦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높은 범죄율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문 8.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일반적으로 공식적 형사절차로부터의 이탈과 동시에 사회내 처우프로그램에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ㄴ. 형사사법기관이 통상의 형사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절차로 이행하는 것으로, 성인형사사법보다 소년형사사법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 ㄷ. 기존의 사회통제체계가 낙인효과로 인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 ㄹ. 종래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가 다이버전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사법의 통제망이 축소되고 나아가 형사사법의 평등을 가져온다.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정답 : ①

☞ 해설 : ① ㄱ, ㄴ, ㄷ는 옳은 내용이며, ㄹ은 옳지 않다.

ㄹ. 기존에는 형사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다이버전의 등장으로 그 대상이 되어 형사사법망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이버전의 대상의 문제, 즉 누구에게 다이버전을 시행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형사사법의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문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법원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또는 강도범죄(이하 ‘특정범죄’ 라고 한다)를 범하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 이라고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부착명령의 청구는 특정범죄사건의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부착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

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6항).

- ① 동법 제5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 ③ 동법 제28조 제1항
- ④ 동법 제22조 제1항

문 10. 소년법 상의 부정기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선고하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 ③ 검사는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형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④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소년법 제60조 제4항).

- ① 동법 제60조 제1항
- ② 동법 제60조 제3항
- ④ 동법 제65조 제3호

* 소년법 제65조(가석방)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假釋放)을 허가할 수 있다.

- 1.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 2.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 3.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

문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까사뉴(Lacassagne)는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범죄원인은 결국 사회와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셀린(Sellin)은 동일한 문화 안에서의 사회변화에 의한 갈등을 1차적 문화갈등이라고 하고, 이질적 문화 간의 충돌에 의한 갈등을 2차적 갈등이라고 설명하였다.

③ 뒤르켐(Durkheim)은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한 범죄는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리적이기 보다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코헨(Cohen)은 중산층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하위계층 출신 소년들이 자신을 궁지에 빠뜨린 문화나 가치체계와는 정반대의 비행하위문화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셀린(Sellin)은 문화갈등이론에서 일탈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와 다른 규범체계를 지향할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문화갈등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규범 등의 충돌을 의미하며, 법은 그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합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적인 문화의 행위규범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전체사회의 규범과 부분사회의 규범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이러한 문화갈등이 커져 범죄를 유발시킨다고 보았다. 그는 문화갈등의 유형으로, 이민, 국가 간의 병합 등에 의한 이질적 문화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 1차적(횡적) 문화갈등과 세대의 차이, 빈부의 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 등 동일문화 내에서의 사회분화로 인한 갈등을 의미하는 2차적(종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문 12. 낙인이론이 주장하는 형사정책적 결론에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형법의 범죄목록 중에서 사회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사회위해성이 없는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범죄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ㄴ. 가능한 한 범죄에 대한 공식적 반작용은 비공식적 반작용으로, 중한 공식적 반작용은 경한 공식적 반작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ㄷ. 가능한 한 범죄자를 자유로운 공동체 내에 머물게 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를 처우하여야 한다.
ㄹ. 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는 그의 사회적 지위를 되돌려주는 탈낙인화가 뒤따라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 정답 : ④

☞ 해설 : ④ ㄱ, ㄴ, ㄷ, ㄹ 모두 낙인이론의 주장내용에 부합한다.

낙인이론은 범죄원인을 범죄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낙인과 반작용의 결과로 보았으며, 특히 법집행기관에 의한 낙인을 강조하여 범죄통제가 오히려 범죄를 야기한다고 보았다. 낙인이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경미한 범죄의 비범죄화(ㄱ), 범죄자에 대한 공식적 행정작용의 축소 및 대체(ㄴ), 사회 내 처우의 확대(ㄷ), 범죄자의 재사회화 이후 사회적 지위의 회복을 위한 탈낙인화(ㄹ)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 13. 소년법 상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경찰서장이 촉범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를 거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ㄴ.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ㄷ.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ㄹ.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ㅁ. 보호처분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의 집행은 정지된다.

- ① ㄱ, ㄴ, ㄹ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 정답 : ②

☞ 해설 : ② 옳은 지문은 ㄴ, ㄷ, ㄹ이다.

ㄴ. 소년법 제49조 제1항

ㄷ. 동법 제25조의3 제1항

ㄹ. 동법 제29조 제1항

ㄱ. 촉범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즉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송치한다.

ㅁ.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동법 제46조).

문 14.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 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피의자가 심신상실자(형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형의 집행기간은 치료감호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④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併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치료감호법 제18조).

- ① 동법 제1조

② 동법 제7조

* 치료감호법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자)에 해당하여 별할 수 없는 경우
2. 고소·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그 고소·고발이 없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反)하여 논할 수 없는 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3.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④ 동법 제16조 제2항

* 치료감호법 제16조 제2항 :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2조 제1항 제1호[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별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減輕)되는 심신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및 제3호[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혹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자 : 15년
2. 제2조 제1항 제2호[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飲)·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는 자 : 2년

문 1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인류학적 입장에서 범죄인을 분류하였으나, 페리(Ferri)는 롬브로조가 생물학적 범죄원인에 집중한 나머지 범죄인의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다고 비판하고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 ② 가로팔로(Garofalo)는 생물학적 요소에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덧붙여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 ③ 아샤펜부르크(Aschaffenburg)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하여 범죄인으로부터 생겨나는 법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 ④ 리스트(Liszt)는 형벌의 목적을 개선, 위하, 무해화로 나누고 선천적으로 범죄성향이 있으나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단기 자유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리스트(Liszt)는 행위자 유형을 개선불가능자, 개선가능자, 기회범으로 나누고, 개선불가능자에게는 중신형에 의한 무해화 조치를, 개선가능자에게는 개선을 위한 형벌의 부과를, 기회범에게는 벌금형 정도의 위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개선가능자에 대한 개선을 위한 형벌을 부과할 때 단기자유형은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리스트는 "단기자유형은 형사정책상 무용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한 형벌이다."라고 하여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강조한 바 있다.

- ① 롬브로조(Lombroso)는 범죄인을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걱정(우발)범죄인, 기

회범죄인, 관습범죄인, 잠재적 범죄인으로 분류하였으며, 페리(Ferri)는 범죄인을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걱정(우발)범죄인, 기회범죄인, 관습(상습)범죄인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페리는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회범죄인을 중시한 바 있다.

② 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을 자연범과 법정범 및 과실범으로 구별하였으며, 과실범은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③ 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범죄인 분류는 심리학적 입장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고, 범죄인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결합하여 행동양식에 따라 범죄인을 분류한 바 있다. 아샤펜부르그의 범죄인 분류에는 우발범죄인, 걱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누범범죄인, 관습범죄인, 직업범죄인 등이 있다.

문 16.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로 인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받은 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일정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범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거나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4호). 즉 인적 피해에 한하며, 물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해자의 불명, 무자력'은 구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③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2조 제1항

④ 동법 제294조의2 제1항

문 17. 소년법 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②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 ③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 상호간에는 병합할 수 있다.
- ④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또는 장기 보호관찰처분을 부과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③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은 병합할 수 없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 소년법 제32조 제2항 :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 1. 제1항 제1호(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 제2호(수강명령) · 제3호(사회봉사명령) · 제4호(단기보호관찰) 처분
- 2. 제1항 제1호(보호자 등에 감호위탁) · 제2호(수강명령) · 제3호(사회봉사명령) · 제5호(장기보호관찰) 처분
- 3. 제1항 제4호(단기보호관찰) · 제6호(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처분
- 4. 제1항 제5호(장기보호관찰) · 제6호(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 처분
- 5. 제1항 제5호(장기보호관찰) · 제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

- ① 동법 제32조 제3항
- ② 동법 제32조 제4항
- ④ 동법 제32조의2 제1항

문 18. 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맛차(Matza)와 사이크스(Sykes)에 따르면 일반소년과 달리 비행소년은 처음부터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부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차별적 접촉과정에서 전통규범을 중화시키는 기술이나 방법을 습득한다.
- ② 레크리스(Reckless)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비행으로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
- ③ 허쉬(Hirschi)에 따르면 누구든지 비행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이를 통제하는 요인으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일상적인 유대가 중요하다.
- ④ 나이(Nye)에 따르면 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비공식적 간접통제방법이다.

☞ 정답 : ①

☞ 해설 : ① 맛차(Matza)와 사이크스(Sykes)는 저서 「비행과 표류」에서 기존의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들이 비행소년과 일반소년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본 점을 비판하고, 비행소년은 중간적이고 표류하는 존재로서, 전통적 가치와 문화에 동조를 나타내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규범위반에 대해 일련의 중화(합리화)시키는 기술을 통하여 내적 통제력이 약화되고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 중화시키는 기술로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충성심에의 호소 등을 들고 있다.

문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된다.
- ③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④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정답 : ②

☞ 해설 : ②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5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은 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이다. 즉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동법 제77조).

- ① 동법 제60조
- ③ 동법 제76조 제1항
- ④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1호

문 20.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 장치를 신체에 부착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 해설 :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7.24, 2008어4).

①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예방적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8.11.16, 88초60).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개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위 법률이 정한 고지명령 절차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2.5.24, 2012도2763).

③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813).